#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70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 박균택 • 이기헌 • 박홍배

박상혁 • 맹성규 • 정진욱

김병기 · 이건태 · 문정복

김현정 • 박지혜 • 주철현

김원이 · 김주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 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근 주택 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등이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포함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 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음.

한편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

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0 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2호) 중 "제21호까지에"를 "제22호까지에"로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명령) ①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			
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		
	<u>국무역보험공사</u>		
<u>22.</u>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u>23.</u>		
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u>제21</u>	<u>利22</u>		
<u>호까지에</u> 준하는 자로서 대법	<u>호까지에</u>		
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